

5차 자유권 규약 보고전 쟁점목록(LOIPR) 시민사회보고서

2019년 5월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출
97개 한국인권시민사회단체

서문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인권 관련 많은 공약이 제시되었고, 실제로 집회의 자유 등 일부 개선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인권에 관한 명확한 비전이나 종합적인 정책을 결여하고 있다. 정부는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와 같은 소위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고, ILO 핵심협약 비준,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철폐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와의 대화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수립 및 이행 과정 모두 형식적이었다.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이행의 절차 등을 담고 있는 인권기본법 제정, 차별금지법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프라이버시권 등과 관련해서는 인권 침해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성소수자,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점점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천명하기는커녕 혐오 발언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대다수 난민을 '가짜 난민'으로 규정하고, 난민 인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성적지향 또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천명하라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 집회의 자유와 관련한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관련 법제 상황을 설명하는 데 그치고 있다. 더욱이 2018년 이후 활발한 '미투운동'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극심한 성차별 사회구조를 다루기보다는 단기적인 임기응변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인권의 무게를 어떻게 느끼는지를 보여준다.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와 인권상황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지 못한다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인권의 문제가 개선될 여지는 거의 없다. 정부가 태도를 바꾸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인권을 후퇴시키는 억압적 정권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 사항

1. 규약의 효력 및 재판에 원용된 사례

헌법에 의하여 가입 및 비준한 규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법원은 규약의 국내법상 법률로서 효력이 있다고는 인정하나, 정부 비준 규약을 구체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더군다나 규약을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경우에도, 추상적인 규약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원 고유의 권한이라고 보아, 위원회의 일반논평이나 개인진정에 대한 판단의 효력까지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 정부는 실제 재판에서 국제인권규약이 판단의 기준으로 원용된 사례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라.
- 정부는 자유권위원회의 규약뿐만 아니라 일반논평, 개인진정에 대한 권고사항을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근거 법률이나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가?

2. 자유권 규약 개인진정 현황 및 국내이행 노력

선택의정서 가입 후 위원회의 최종견해 중 규약상 의무위반으로 결정한 사례는 561명, 125건이다.¹ 이 중 115건은 모두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다. 2018년 11월 대법원은 양심

1

| | Case | Case Number | Violated Article(s) |
|----|----------------------------|---------------------------------------|------------------------------------|
| 1 | Geuntae Kim v. ROK | CCPR/C/64/D/574/1994 | Article 19.2 |
| 2 | Tae Hoon Park v. ROK | CCPR/C/64/D/628/1995 | Article 18.1, 19.1, 19.2, 26 |
| 3 | Shin v. ROK | Communication No. 926/2000 | Article 19.2 |
| 4 | Jong-Kyu Sohn v. ROK | CCPR/C/54/D/518/1992 | Article 19.2 |
| 5 | Gi-geong Nam v. ROK | CCPR/C/78/D/693/1996 | Article 19.2 |
| 6 | Yong-joo Kang v. ROK | CCPR/C/78/D/878/1999 | Article 10.1, 10.3, 18.1, 19.1, 26 |
| 7 | Kim Jong-Cheol v. ROK | CCPR/C/84/D/968/2001 | Article 19.2, 25, 26 |
| 8 | Lee Jeong-eun v. ROK | CCPR/C/84/D/1119/2002 | Article 22 |
| 9 | Ajaz and Jamil v. ROK | CCPR/C/66/D/644/1995 | Article 6, 7, 9, 10, 14 |
| 10 | Andrea Vandom v. ROK | CCPR/C/123/D/2273/2013 | Article 17, 26, 14.1 |
| 11 | Yoon and Choi v. ROK | CCPR/C/88/D/1321-1322/2004 | Article 18 |
| 12 | Jung et al v. ROK | Communications Nos. 1593 to 1603/2007 | Article 18 |
| 13 | Min-Kyu Jeong et al v. ROK | CCPR/C/010/D/1642-1741/2007 | Article 18 |
| 14 | Jong-nam Kim et al v. ROK | Communication No. 2179/2012 | Article 18.1, 9.1 |

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²을 내림으로써 위원회의 최종견해가 이행되었다. 나머지 10건 중 8건은 본 규약 19조 표현의 자유 침해에 따른 결정례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가안보에 따른 국가보안법상 불가피한 제약이며 표현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엄격한 법 해석과 적용을 해오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³하며 본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불이행하고 있다.

- 개인진정에 대한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를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법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제시하라.

3. 테러관련 법률과 자유권 규약의 조화

자유권위원회는 제4차 심의의 최종견해에서 법률상 테러행위를 명확히 정의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여전히 다수의 주요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테러방지법⁴은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된 자에 대한 ①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감청 등 통신제한조치 포함) 등 관련 정보 수집, ② 개인정보(민감정보⁵ 포함)와 위치정보 수집, ③ 추적 등 국가정보원장이 전방위적인 사찰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⁶ 그런데 테러위험인물의 개념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

²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³ Fourth periodic reports of State parties submitted by Republic of Korea, Paras. 26-30

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약칭: 테러방지법)

⁵ 민감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3 조 제 1 항에 개념이 규정되어 있는데,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의미한다.

⁶ 테러방지법 제 9 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 1 항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 2 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고,⁷ 테러위험인물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정보수집 결과를 견제할 장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 정부는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2016. 3. 3. 이후 현재까지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된 사람의 숫자와 그 사람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정보수집 행위와 건수를 밝혀라.
- 정부는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된 자에 대한 과도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떠한 견제장치를 두고 있는지, 과도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진 경우 어떠한 피해자 구제방안을 두고 있는지 밝혀라.

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정부는 2018년 8월 3차 NAP를 발표하였다.⁸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된 NAP 수립과정과 그 내용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우선, 시민사회와 정부간의 분야별 협의과정에서 법무부 주도의 NAP수립의 한계가 드러났다. 상당수의 정부 부처는 NAP에 대한 이해와 수립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3차 NAP에서는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 심지어 사회적 약자 목록에서 성소수자를 삭제하여 1,2차 NAP보다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대한 해명조차 들을 수 없었다.⁹ 사형제 폐지와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계획도 3차 NAP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이유로 상당수의 인권문제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연구'하겠다는 계획만을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 정부는 성소수자, 난민과 이주민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3차 NAP이행과 4차 NAP수립 시 어떻게 보완해 나갈 예정인가?
- 현재 법무부가 주도하는 NAP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NAP 제도개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5. 기업과 인권

정부는 2018년 8월 발표한 3차 NAP에서 '기업과 인권' 장을 처음으로 별도로 구성했

⁷ 테러방지법 제 2 조 제 3 호

⁸ <http://bit.ly/2WBAPpw>

⁹http://www.khis.or.kr/spaceBBS/bbs.asp?act=read&bbs=notice1&no=523&ncount=499&s_text=&s_title=&pa geno=2&basic_url=

다.¹⁰ 그러나 공기업을 대상으로만 인권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도국에서의 한국기업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는 반영되지 않았다. 더욱이 ODA사업에 있어서 인권영향평가 도입을 유보하는 등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HRDD) 실천계획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았다. 정부는 한국기업 해외투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내외 관계기관과 주요 상황을 공유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NAP에서 밝혔으나, 어떤 목적으로 어떤 부처가 담당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NCP는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피해자 구제보다는 한국 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NCP가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 정부는 ODA 사업을 포함하여 공기업 및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인권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영향평가 도입의 시기와 범위는 무엇인가?
- 해외투자 한국기업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해 NCP진정의 실효성 증대뿐만 아니라 한국 사법절차를 활용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인가?
- 정부는 해외공관이 주도적으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지 인권옹호자와 협력하여 한국 기업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6. 국가인권기구

국가인권위원회는 보수정권의 지속적인 독립성 훼손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 결과 2016년 5월, 세 차례의 등급보류 끝에 A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다. 세계국가인권기구 연합(GANHRI)은 인권위에 A등급을 부여하면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독립적 인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하였다.¹¹ 그러나 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위한 인권위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11명의 인권위 위원 중 1명의 상임위원과 1명의 비상임위원을 선출하는 자유한국당은 지속적으로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등의 반인권적인 모습을 보이는 인사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하고 있다.

¹⁰ <http://bit.ly/2WBAPpw>

¹¹ <https://nhri.ohchr.org/EN/AboutUs/GANHRIAccreditation/Documents/SCA%20FINAL%20REPORT%20-%20MAY%202016-English.pdf>

- 정부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계획을 제시하라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하는 인사들이 국가인권위원으로 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제2조

1. 차별금지법

인종,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자유권위원회는 물론, 사회권위원회¹², 여성차별철폐위원회¹³, 인종차별철폐위원회¹⁴ 등에서 반복된 권고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차별금지 사유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존재'한다는 이유를 대며(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8) 법 제정을 회피하고 있다. 2018년 제3차 NAP에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교계 등의 이견이 큰 상황'이라 기술하는 동시에 NAP에서 '성소수자' 항목을 삭제한 것을 감안하였을 때,¹⁵ 정부의 이러한 소극적 태도는 차별을 증대하는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다. 2020년 4월로 임기가 종료되는 제20대 국회에 입법발의를 추진할 계획도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하라
-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입법, 행정적 대응을 하고 있는지 밝혀라

2.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절차

한국은 2006년 대법원 결정¹⁶ 이후 법률이 아닌 대법원의 예규¹⁷에 의해서 성별정정의

¹²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4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E/C.12/KOR/CO/4

¹³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제8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CEDAW/C/KOR/CO/8

¹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제17,18,19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CERD/C/KOR/CO/17-19

¹⁵ 대한민국정부,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8.

¹⁶ 대법원 2006. 6. 22.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¹⁷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5호, 시행 2015. 2. 1.]

절차와 조사 사항이 제시된다. 그러나 위 예규는 모호하고, 트랜스젠더가 실제로 성별정정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거의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법률이 아닌 예규로 절차가 규정되어 현장에서는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인권 침해도 발생하고 있다.¹⁸ 2018년 트랜스젠더 7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¹⁹에 따르면, 성별정정 절차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응답자의 41.4%가 '정보를 찾을 수 없다'고 답했고, 37.1%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다'고 답했다. 불필요한 보정권고나 심문 과정에서 모욕을 당한 경우도 여럿 있었다.

- 법원은 성별정정 절차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만일 자료가 없다면 통계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지 제시하라.
- 법원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신속, 명료, 접근 가능한 성별정정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가

3. 균형법 추행죄

균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는 군대 안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동성간 성행위를 형사상의 범죄로 보며 한국에서 유일하게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조항이다.²⁰ 2015년 자유권위원회²¹를 비롯해 많은 유엔 기구들²²이 이 조항에 대한 폐지를 권고했다. 이 조항에 대해 지난 14년간 3번째 위헌성 심사에서 2016년 7월 헌법재판소는 옛 균형법 제92조의5 조항에 대해 재판관 5명 합헌, 4명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

¹⁸ 「법원, 성전환 신청자에 '성기 사진' 요구」, <한국방송> 2013. 10. 13.

¹⁹ 류민희 외,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절차개선을 위한 성별정정경험조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회 공익·인권 분야 연구 결과 보고서, 2018. 6. 22.

²⁰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²¹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b) The punishment of consensual same-sex sexual conduct between men in the military, pursuant to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repeal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HRC, UN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Republic of Korea (CCPR/C/KOR/CO/4, para. 14).

²² UN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Republic of Korea (CCPR/C/KOR/CO/4, para. 14-15),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E/C.12/KOR/CO/4 para. 24-25),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on the Combined Third to Fif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CAT/C/KOR/CO/3-5 para. 35), 그리고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대한민국'(A/HRC/37/11)에 대한 실무단의 보고서 중 프랑스, 아일랜드, 캐나다,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권고

다.²³ 정부는 “균형법 추행죄는 성군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지 성적 지향에 대한 처벌이 아니다”고 답한다.²⁴

- 정부는 이 조항에 의한 수사, 기소, 처벌 통계를 제시하라
- 정부는 이 조항에 기반한 수사와 집행의 중지를 선언하고 폐지할 계획을 밝혀라

4. 가족구성권 차별

2014년 서울시 서대문구청은 한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에 대해 불수리 처분을 했다. 법원은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하여 “현행법 체계하에서 법률 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며 2016년 5월 각하하였고, 12월 항고심에서 항고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동성커플은 상속, 의료 결정, 연금 등 혼인한 이성 커플이 누리는 권리를 얻을 수 없다. 이로 인하여 생존 파트너는 사망한 동성 파트너의 재산을 상속한 가족으로부터 절도, 사기 등으로 형사상 고소를 당하기도 한다. 또한 정부는 법령과 판례에 의해 비결혼 이성 커플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비결혼 동성 커플에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동성 커플은 연금, 주거, 건강보험 등의 사회적 권리의 향유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다. 혼인 관계가 아닌 동성 커플에게 재산문제, 의료결정권, 공공주거와 국민건강보험 등의 사회복지 접근권 등을 부여하는 법률인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준비되었으나, 국회에서 발의되지 않았다

- 동성커플이 이성커플과 동등한 위치에서 사회보장을 포함하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라
- 성 중립적인 생활동반자법 도입 계획을 제출하라

5. 사회적 참사와 인권

2014년 세월호 참사로 250명의 고등학생을 포함한 304명이 사망했다.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다수의 기업에 의해 제조되고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물질로 인해 적어도

²³ Hankyoreh, “Constitutional Court upholds military’s ban on sodomy”, 8 August 2016.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755208.html

²⁴ 법무부, <제2차 UN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권고이행 시민사회정책제언에 대한 정부 의견>, 2014.10.

수백명이 사망했고, 수천명이 건강상 피해를 입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고문방지위원회의 2017년 최종견해와 집회결사특별보고관의 2016년 방문보고서는 세월호참사 피해가족들의 집회에 대한 탄압,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해산, 피해가족단체 등록 거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유해물질특별보고관의 2016년 한국방문보고서와 기업인권워킹그룹의 2017년 한국방문보고서는 가습기살균제 관련하여 피해자 수와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부실한 감독, 기업들의 실사의무 위반, 제한된 피해 인정, 구제지공의 지연 등을 지적한 바 있고, 대부분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또한 두 참사의 정확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기무사,²⁵ 경찰²⁶이 세월호 피해가족들을 체계적으로 사찰했음이 드러나고 있지만 국정원의 사찰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다. 또한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들 모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으며 유사한 사회적 참사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한 가시적인 재난 대응에 관한 인권에 기초한 접근(예: 피해자들이 진실에 대한 권리, 정보접근권, 집회와 결사의 자유의 보장)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참사의 원인 조사, 국정원 등 정부기관의 피해가족들에 대한 사찰 조사와 모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당사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와 향후 계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라.
-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찾기와 실제 피해규모 파악,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범위 확대와 정부의 책임 인정 및 향후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대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와 향후 계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라.
- 피해자들이 진실에 대한 권리, 정보접근권, 집회와 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포함하는 재난 대응에서 인권에 기초한 접근이 당사국의 법제와 관행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라.

6. 국정원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구금

자유권위원회의 2015년 최종견해(paras. 36-37)와 고문방지위원회의 2017년 최종견해(paras. 17-18)는 국가정보원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대하여 1)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가능한 최소한 기간의 구금 보장, 2) 심문 시를 포함 구금된 전

²⁵ "기무사 TF 꾸려 세월호 유가족 조직적 사찰", MBC News (2018. 7. 2),

http://imnews.imbc.com/news/2018/politic/article/4676794_22672.html (검색일: 2019. 5. 1.)

²⁶ "경찰, 박근혜 청와대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여론전' 제언", KBS News (2019. 4.14),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79733&ref=A> (검색일: 2019. 5. 1.)

기간 동안 변호인 접견권 보장, 3) 정착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결정하는 조사절차와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수사절차 구별 등을 정부에 권고했다. 2018년과 2019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사기간 상한이 3개월로 축소되었으나 보호에 관한 결정기간에 제한이 없어 여전히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다. 여전히 국정원이 조사와 구금에 관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변호인접견권 보장 등 적법절차에 관한 실질적 변화는 없다. 보호결정조사와 형사수사의 관련당국과 절차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모든 북한이탈주민을 잠재적 북한간첩으로 간주하는 인권 침해와 남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결정조사와 형사수사의 관련주체와 절차가 어떻게 구별되어 있는지 혹은 정부가 양자를 구별할 계획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
- 변호인접견권 보장 등 적법절차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취해진 법제 개선과 관련 조치를 설명하라.
- 받아들여지지 않은 보호신청의 수, 보호가 거부된 이유와 이들 사례에 대하여 취해진 조치에 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라.

7. 학생 자유권 실현의 차별

현행 법률체계는 학교 내 학생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학교 내 학생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학칙, 교사의 생활지도 등에 의해 자의적으로 침해되고 있다. 가령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는 학칙에 의한 두발, 복장 등 용모 규제, 소지품검사, 휴대전화 압수를 허용한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인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광주, 서울, 전북 단 네 곳에서만 제정되었고, 2013년 이후 다른 지역에서의 제정은 좌초되었다. 경남지역에서 2019년 조례 제정이 추진되었지만, 반동성에 진영 등 혐오세력의 반대와 학교 내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필수 조항이 삭제되는 등 조례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 정부는 학교 내 학생의 시민·정치적 권리 실현의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포함한 구체적 조치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라.
- 일선 학교에서 학교 내 학생의 인권 침해를 예방·방지하기 위한 피해구제수단 마련, 홍보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

8. 정치 및 공공 영역 여성 대표성

공공부문 여성비율은 국가직 고위공무원단 6.7%, 국가직 본부과장급 공무원 17.5%, 지방직 과장급 공무원 15.0%, 공공기관 임원 17.9%로 여전히 20%를 밑도는 상황이다.²⁷ 또한 정부는 2018년 기준으로 정부위원회 여성비율이 41.9%이며 남성참여율이 40%에 미달한 위원회에 개선권고를 하였다고 밝혔는데, 이는 위원 중 '위촉직'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실질적으로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의 적극적 조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직을 포함한 전체위원회 성별비율을 조사하여 개선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정치영역에서 여성비율은 국회의원 17%, 광역의회의원 19%, 기초의회의원 30%이다. 또한 여성광역자치단체장은 전무하며, 여성기초자치단체장 비율도 3.5%에 불과하다. 여성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구 여성공천 노력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 여성할당제 강화 등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 고위공무원, 공공기관임원, 정부위원회 등 공공부문에서의 여성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라.
- 여성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해 취한 조치를 제시하라.

9. 성별임금격차 및 노동 성차별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2017년 기준 37%로 16년째 OECD 국가 중 가장 크다. 최근 여러 공공기관과 금융회사가 채용 과정에서 남성을 고용하고 여성을 탈락시키기 위해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한 사건²⁸에서 드러나듯이, 여성들은 양질의 일자리 진입 과정에서부터 많은 장벽에 부딪힌다. 또한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만연한 성차별로 인하여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시간제 일자리 혹은 비정규직), 견고한 성별직무분리, 그리고 반복적인 고용단절(경력단절)을 경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성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정부는 여성고용에 있어 근본 문제인 성차별을 근절하기보다 고용률 향상이나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등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방안 마련에 그치고 있다.

- 정부는 성별임금격차 해소의 한 방안으로서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계획을 제시하라.

²⁷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18년 현황 및 '19년 추진계획>, 2019.3.18.

²⁸ 'South Korea's glass ceiling: the women struggling to get hired by companies that only want men', Feb. 2, 2019, CNN, <https://edition.cnn.com/2019/01/31/asia/south-korea-hiring-discrimination-intl/index.html>.

- 정부는 노동위원회가 고용상 성차별 시정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10. 양육비 이행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전체 평균 가구 소득의 절반도 되지 않으며, 이는 아동의 빈곤 및 건강한 성장 발달 저해로 연결된다. 또한 비양육자에 의한 양육비 지급률이 11.6%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²⁹, 현행 양육비 이행 강제조치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국가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과 책무가 있음을 규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개인이 복잡한 소송절차와 사적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 후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강제 회수하는 방식인 양육비 대지급 제도의 운영이 시급하다.

- 비양육자 소득파악 및 효과적인 양육비 이행 강제조치 등 양육비 지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에 관한 정보 및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

11. 건강가정기본법 및 한국의 가족 정책

이성애 결혼으로 형성된 가족만을 '건강한 가정'으로 바라보는 「건강가정기본법」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정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법은 가족을 혼인, 혈연 혹은 입양으로 형성된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하고(동법 제3조 제1항), 모든 국민이 결혼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8조). 또한 이 법은 한부모 가족 등 '건강한 가정'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가족들을 '취약'가족, '위기'가족으로 분류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기존의 통념과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강화한다. 따라서 건강가족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고,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고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마련한 정책을 제시하라.
- 「건강가정기본법」의 전면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

²⁹ 양육비 채권 보유자가 최근 1년 동안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은 경우는 11.6%, 부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경우는 3.7%, 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0.8%이다.

12. 낙태죄 폐지 및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

한국의 형법 제269조, 제270조에 존재하고 있는 낙태죄는 지난 66년간 정부의 인구 정책에서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낙태죄는 정부가 196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산아제한 정책을 펼칠 때는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이 심각한 이슈로 등장하자 정부는 이 법의 적용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분노한 여성들은 수 년간 낙태죄 폐지를 위해 싸워왔다. 마침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임신중단이 여성의 기본권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국회에 입법을 주문했다. 따라서 국회는 여성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해 법을 제·개정해야 한다. 우선 형법의 제27장 '낙태의 죄' 자체를 삭제함으로써 임신중단은 '처벌'이 아닌 '권리'의 영역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낙태의 정당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역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을 포함하여 재생산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 임신중단을 여성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한 형법 개정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 또한 여성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 및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라.

제3조

1.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분명한 사법처리

한국의 가정폭력사건 기소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다른 범죄의 기소율과 비교했을 때도 압도적으로 낮은 수치³⁰로, 가정폭력범죄는 사실상 형사 처벌되지 않고 있다.

³⁰ 전체범죄 기소율: 2014년 38.1%, 2015년 36.8%, 2016년 38.8%

폭력범죄 기소율: 2014년 29.0%, 2015년 25.2%, 2016년 24.7%

성폭력범죄 기소율: 2014년 42.2%, 2015년 35.9%, 2016년 33.0%

- 출처: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www.crimestats.or.kr)를 통해 검찰청 범죄분석 DB 재구성

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가해자의 성행 교정 및 관계회복'을 통한 '가정유지'에 방점을 두고, 다른 형사범죄자와 다르게 상담이나 교육 등을 조건으로 한 형사처벌의 예외대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³¹. 특히 배우자

| 기간 | 접수 | 처 리 | | | | | | | |
|--------|---------|---------|--------|-------|--------|-------|--------|-------------|--------------|
| | | 처분계 | 기소계 | 기소율 | 불기소계 | 불기소율 | 기타계 | 가정 보호 사건 송치 | 가정 보호 사건 송치율 |
| 2011 | 2,939 | 2,942 | 529 | 18.0% | 1,997 | 67.9% | 416 | 384 | 13.1% |
| 2012 | 3,154 | 3,159 | 469 | 14.8% | 2,006 | 63.5% | 684 | 629 | 19.9% |
| 2013 | 17,191 | 17,131 | 2,574 | 15.0% | 10,080 | 58.8% | 4,477 | 4,238 | 24.7% |
| 2014 | 23,527 | 23,457 | 3,125 | 13.3% | 12,688 | 54.1% | 7,644 | 7,185 | 30.6% |
| 2015 | 47,007 | 46,545 | 3,970 | 8.5% | 23,437 | 50.4% | 19,138 | 18,207 | 39.1% |
| 2016 | 54,191 | 53,237 | 4,527 | 8.5% | 27,273 | 51.2% | 21,437 | 20,311 | 38.2% |
| 2017 | 47,036 | 46,912 | 4,489 | 9.6% | 23,298 | 49.7% | 19,125 | 17,184 | 36.6% |
| 2018.7 | 21,526 | 21,289 | 1,966 | 9.2% | 10,253 | 48.2% | 9,070 | 8,236 | 38.7% |
| 계 | 216,571 | 214,672 | 15,194 | 7.1% | 77,481 | 36.1% | 81,991 | 76,374 | 35.6% |

* 불기소계: 혐의 없음, 기소유예(상담조건부, 교육조건부, 기타),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 기타계: 가정보호사건 송치, 소년보호사건 송치, 기타

* 출처: 정춘숙 국회의원, 2018년 법무부 제출자료(2018.07.04.)

³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검사는 가해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9조의2)하거나 보호처분을 위해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제9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은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피해자의 가해자와의 '혼인관계 유지 의사와 상황'을 기계적으로 판단하여 처리되고 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도 가해자 대다수가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거나 보호처분 시에도 상담이나 교육, 사회봉사가 주요하며,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접근행위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금지, 친권행사제한 등의 처분은 극히 미미하다.

■ 가정보호사건 죄명별 접수 현황(2016년)

- 상해/폭행 18,589명(82.7%), 유기/학대/아동학사 4명(0.0%), 협박1,830명(8.1%), 재물손괴 1,827명(8.1%), 기타 232명(1.1%) (출처: 법무연수원, 2017 범죄백서)

■ 가정보호사건 처분 현황(2016년)

- 보호처분 11,368명(52.1%), 불처분 9,792명(44.9%), 기타 642명(2.9%)

- 보호처분 중 1호(접근행위제한) 78명(0.7%), 2호(접근행위제한-전기통신이용) 2명(0.0%), 3호(친권행사제한) 0명(0.0%), 4호(사회봉사-수감명령) 2,614명(23.0%), 5호(보호관찰) 1,622명(14.3%), 6호(감호위탁) 0명(0.0%), 7호(치료위탁) 104명(0.9%), 8호(상담위탁) 4,393명(38.6%), 1·5호 63명(0.6%), 3·5호 0명(0.0%), 4·5호 1,356명(11.9%), 5·8호 455명(4.0%), 기타 681명(6.0%)

- 출처: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www.crimestats.or.kr)를 통해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DB 재구성

강간을 비롯한 배우자폭력의 경우 사법처리 전반에서 화해나 조정 등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있다. 배우자폭력에 대한 사법부의 단일한 인식은 배우자강간에 관한 대법원 판결³²에서 드러나며, 정부는 배우자 관계에서 발생한 범죄와 형사사법처리에 관한 통계조차 국민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가 이혼을 진행할 때 가해자와의 대면과 관계회복을 주문하며, 부모교육·부부상담명령을 내리고 가해자에게 자녀 면접교섭권이나 양육권을 부여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자녀들의 안전과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 및 생활공간을 떠나 친척이나 지인의 집, 숙박업소, 보호시설 등 불안정한 주거지로 피신하고, 가해자의 추적과 폭력을 피하기 위해 학교와 직장 등의 생활과 인간관계의 상당 부분을 포기한 채 살아야 하는 현실이다.³³

- 가정폭력범죄가 형사처벌 대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나 상담이나 교육 중심의 보호처분으로 처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가정의 유지와 회복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범죄에 대한 적절한 기소와 처벌이 되지 않고, 피해자가 분쟁해결 메커니즘에 내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 및 입법상의 조치를 제시하라.
- 배우자 강간을 포함한 배우자 관계에서 발생한 형법상의 범죄 실태와 사법처리 현황에 관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라.

³² 배우자강간을 범죄로 인정한 선례로 적용되고 있는 2013년 대법원 판결(2012도14788)은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것으로, 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동의에 부족'에 기반하여 부부강간을 인정한 것이 아닐뿐더러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³³ [사례] 2018년 10월 22일, 25년간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이 전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려 무참히 살해됐다. 피해여성과 세 자녀는 혼인 기간 내내 가해자의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렸고, 이혼 후에도 지속적인 살해 위협을 받았다. 폭행과 상해, 스토킹, 살해협박, 흉기사용, 방화시도 등의 폭력에 따른 경찰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경찰은 가해자의 "잘 해결됐다"는 말만 믿고 돌아가거나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다음에 또 그러면 그때 가서 신고하라"며 피해자의 구조요청을 무시했다. 가해자는 상해죄로 검거되기도 했지만 구속되지 않았고, 경찰에 연행되어도 몇 시간 만에 풀려났다. 신고해도 가해자에 대한 격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피해 휴대전화번호를 10여 차례 바꾸고, 보호시설로 피신하는 등 6차례 거주지를 옮겼고, 개명까지 했다. 법원의 접근금지명령도 받았지만 가해자의 추적과 접근을 막는데 소용이 없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자녀를 미행, 추적하여 위치를 찾아내 피해자의 회사와 집, 친척 집 등으로 수시로 찾아와 살해 위협을 했고,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집 앞 주차장에서 살해되고 말았다.

2. 강간죄 구성요건 및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2018년 이후, 한국사회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미투운동이 혁명처럼 일어나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사회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성폭력에 대응하는 국가의 법과 제도가 외관상으로는 어느 정도 틀이 잡힌 것 같지만, 실제 그 이행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폭행과 협박을 요하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폭력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성폭력 범죄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 즉 성폭력의 판단 기준일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UN으로부터 모든 형태의 강간은 협박이나 폭력대신 '동의를 없는' 경우로 정의해야 한다는 거듭된 권고³⁴를 받아왔다. 현재 이와 관련한 법안이 9개나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논의조차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시급한 법 개정이 요구된다.

-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개정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및 일정을 제시하라.
- 경찰, 검찰, 재판부 등 형사사법절차 종사자를 비롯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언론, 교육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3.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도 개선

현행법상 성적인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여성의 일상 사진을 성적으로 합성해서 유포하는 등의 가해는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³⁵ 젠더 위계를 기반으로

³⁴ UN 자유권규약위원회(2015), 대한민국 제4차 정기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 no. 19(모든 상황에서의 부부강간을 분명히 범죄화해야 하며, 모든 형태의 강간은 협박이나 폭력 대신 동의가 없는 경우로 정의해야 한다) 과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2018), 대한민국 제8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no. 23(a)(형법 제297조를 개정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의 부족을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고 특히 배우자 강간을 범죄화할 것)의 권고가 있다. 또한 UN CEDAW 일반권고 제35호(e)에서도 성폭력을 신변 안전 및 육체적, 성적, 정신적 온전성(integrity)에의 권리에 반하는 범죄로 특정 짓고, 부부강간, 지인강간, 데이트 강간을 포함하여, 성범죄의 정의가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에 기반을 둔 강압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장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³⁵ [사례 1]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후 삭제하기로 하였으나 삭제하지 않은 채 가해자의 뜻대로 피해자가 통제되지 않을 때마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지속되는 유포 협박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와 헤어지기도 어려운 피해 상황이었다. 성폭력 처벌법이 아닌 형법 제283조로 진행
[사례 2]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상 사진 수십 장을 타인의 나체와 합성하여 유포하였다.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허위사실까지 함께 유포했고 피해자는 해당 사건으로 직장도 거주지를 옮겨야 했고 연락처도 변경해야 했다.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는 성폭력이었으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진행

하여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침해하는 명백한 성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법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어 형법상 협박죄,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 명예훼손 등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법의 공백 때문에 성폭력 처벌법에 포섭되지 못하는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된다. 또한 동의 없이 유포된 성적 촬영물은 그 존재만으로도 여성의 삶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강력한 낙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회권이 박탈되는 경우가 많다.³⁶ 그러나 성적 촬영물 유포 피해자는 현재 자신의 촬영물을 통제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³⁷ 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피해자가 원할 때 삭제할 수 있어야 하며, 누군가가 그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삭제를 강제할 수 있거나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이를 위한 자율적 노력을 해야 하며,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성적 촬영물 유포 협박, 성적 이미지 합성 피해자 또한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라.
- 본인의 성적 촬영물을 통제할 권리가 없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라.

제6조

1. 사형제 폐지

정부는 사형집행이 중단된 지 21년이 넘는 현재까지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인 바 없다. 2018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³⁸가입을 권고했고 10월에는 국회의원 32명이 가입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과 명시적인 사형집행 중지선언과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³⁶ <http://koreabizwire.com/victims-feel-unprotected-by-lax-rules-on-revenge-porn/126205>

³⁷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성적 촬영물은 피해자가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강제권이 없다. 삭제 권한은 플랫폼 운영자와 소지한 사람에게 있으며, 현행법상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것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

³⁸ '시민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 의정서'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 정부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협약 가입 시 유럽평의회에 약속한대로³⁹ 사형집행의 중단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라.
- 정부는 사형제도를 폐지할 계획을 밝혀라.

제7조

1. 수사 과정에서의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금지 노력

수사 과정에서 물리적 고문은 감소하고 있지만, 다양한 비인도적 처우의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검찰과 경찰에 대한 진정 유형 중에서 불리한 진술강요, 심야 장시간 조사, 폭언 및 욕설 등 인격권 침해, 폭행 가혹행위가 많았다.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고지하여도 수사관이 질문을 계속하면서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의 고문행위에 대한 엄격한 금지가 실효성 있도록 입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과거 수사기관의 고문행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수사과정에서 비인도적 처우로 인한 수사기관 고소·고발사건의 수와 비인도적 처우의 유형, 그 결과(기소 비율), 국가인권위 진정 건수와 그 결과를 제시하라.
- 수사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도 수사관이 계속 질문하면서 진술을 요구하는 관행을 막고 진술거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과거 수사기관의 고문 등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책임을 제대로 지우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2.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절차의 신체 침해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 대한 대법원의 예규⁴⁰는 성별정정에 있어 법원의 조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재량을 함의하는 '조사사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법원은 사실상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예규에 의하면 성별정정을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일 것, 생식능

³⁹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4399.html

⁴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5호, 시행 2015. 2. 1.]

력제거수술, 성전환수술을 했을 것, 혼인하지 않거나 이혼했을 것, 미성년자녀가 없을 것이 요구된다. 또한 성인인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2013년 이후 외부성기수술을 요구하지 않는 법원들이 일부 있었으나⁴¹ 여전히 많은 법원에서는 외부성기를 포함한 성전환수술을 요구하고 있다.

- 법원은 성별정정에 대한 지방법원 판결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 법원은 위원회의 4차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예규를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는가

제8조

1.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농·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최대 노동시간에 대한 법적 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농·축산·어업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비인간적인 주거환경 및 폭력과 차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변경이 어려워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의 상황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송출업체에 지불한 고액의 이탈보증금으로 인하여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사업장을 떠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한편,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 고용주나 관리업자에 의해 여러 농장에 불법으로 파견근로를 당하는 명백한 인신매매도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소한 인신매매의 정의로 인하여 가해자들은 인신매매로 기소가 되지 않고 있으며, 법 집행 공무원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지 못해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주구금과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고 있다.

- 근로감독을 통해 농·축산·어업 노동자들의 최소 노동조건, 주거기준 위반 및 인권 침해 발생 여부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적발이 된다면 이후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해 밝히고, 노동조건 및 주거기준 준수 및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라.
- 형법의 인신매매 죄로 사업주 및 인력업체가 기소된 경우가 있는지,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을 위한 지표가 있는지,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현장의 경찰, 출입국직원들에게 교육이 이루어진 바가 있는지, 이러한 교육 후 단속과정 등에서 이주노

⁴¹ SOGILAW, 「Annual Review 2014: Human Rights Situation of LGBTI in South Korea」, 69p, 2015.

동자들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식별이 되어 보호가 된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해 밝혀라.

2. 성매매,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한국의 성산업 규모는 약 6조원으로 영화산업의 5배에 달하며 한국 남성의 성구매 경험 비율은 56.7%에 이른다.⁴² 현행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피해자’를 처벌하지 않으나, ‘피해자’를 강제·강요된 상태로 성착취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만 한정한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많은 여성들이 ‘자발적 성판매자’로 분류되어 처벌되고 있다. 특히, 성착취 상황에 놓인 수많은 여성들, 내국인 성인 여성뿐만 아니라 이주여성, 아동/청소년들도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되고 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전면적인 비범죄화가 필요하며, 성구매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형량이 높아져야 한다. 또한 성매매/성산업 단속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사과정의 일원화, 전담부서의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엔터테인먼트 비자가 인신매매 창구로 이용되는 것, 최근 태국 등 무사증으로 국내에 들어와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등 이주여성에 대한 성착취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인 법 제정에 대해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인신매매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중심으로 한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라.
-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자인 ‘대상청소년’을 삭제하고 성착취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과 보호를 하라고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그리고 관련 개정 법률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시하라.
-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인 법 제정 및 이주여성에 대한 노동비자 발급 등 이주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타임라인과 함께 제시하라

⁴² 여성가족부(2013), 성매매실태조사

제9조

1. 불구속 수사, 재판 원칙

현재 불구속피고인이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판결선고 시 법정 구속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법률인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대법원 예규에 규정되어 있다. 예규 제57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도록 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속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상위규범인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규정 취지와 상충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항소심과 상고심 과정에서의 불구속 재판 원칙이 고수될 수 있는지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정부는 불구속 재판 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불구속 피고인의 실형 선고 시 법정 구속 여부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의 제도개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라.

2. 변호인 참여권 보장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또한 변호인이 신문 중 의견을 제시하려면 검사·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도록 해, 신문 도중 피의자에게 조언을 하는 등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않다.⁴³

- 정부는 변호인의 수사참여권 배제사례에 대한 조사 및 변호인 참여권의 보장을 위한 관계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하라.
- 법무부는 최근 인권보호수사준칙을 개정하였는데,⁴⁴ 개정지침의 이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라.
- 정부는 2017년 및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⁴⁵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침을 제시하고, 변호인의 참여권이 전적으로 보장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⁴³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1항 및 제3항 참조

⁴⁴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피의자면담'을 빌미로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⁴⁵ 헌법재판소 2017. 11. 30. 2016헌마503 결정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 단계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판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의자의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므로 헌법상의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함), 헌법재판소 2019. 2. 28. 2015헌마1204 결정 (변호인이 되려는 청구인의 '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함)

답변하라.

3. 긴급체포제도 개선

최근 10년간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 중 24.0%는 구속영장신청조차 되지 않고 석방되었다.⁴⁶ 이를 통해 볼 수 있듯 수사기관이 긴급체포를 수사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는 경우가 많아, 긴급체포에 대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이 관철되지 못하고 있다.

- 정부는 긴급체포 남용을 막고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체포 후 즉시 사후체포영장을 받도록 하거나, 구속영장 청구시한을 단축하는 등의⁴⁷ 대책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이 외의 긴급체포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라.
- 정부는 긴급체포 대상범죄의 하한을 높여 그 범위를 축소하고, 자진 출석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긴급체포를 제한하는 등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보다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라.

4.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체포구속적부심, 보석

현행법상 구속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입증할 부담이 피의자에게 지나치게 지워지는 경우가 많고, 구속영장 발부 통지가 변호인에게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거나⁴⁸ 영장발부의 기초가 되는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⁴⁹, 체포구속적부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⁴⁶ 2018. 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경찰이 긴급체포한 11만2249명 가운데 4만5577명(40.6%)가 풀려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기간 동안 긴급체포한 피의자 중 2만6957명(24.0%)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0121001001)

⁴⁷ 김준성,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제도에 관한 재검토』 13쪽~17쪽 참조

⁴⁸ 2017년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신속한 변론준비 등 방어권 강화를 위해 변호인에게 피의자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문자메시지로 즉시 통지하라고 검찰에 권고하였고, 검찰은 2017. 12.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지침'을 개정했으나, 현재까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8042514418242560>)

⁴⁹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은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피의자 신문조서 등)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에 열람을 청구해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기각될 여지가 많다.

- 정부는 구속사유의 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고, 그 밖의 제도 개선을 계획을 제시하라.

5. 인신구속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할 권리

현행법상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인신보호법상의 "피수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청구가 불가하다. 또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구제청구에 의해 수용해제 결정을 받은 인원이 288명(전체의 7.24%)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이유 없이 수용을 계속하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례가 절대다수의 경우에 해당하여, 구제청구 제도의 실효성이 지적되고 있다.⁵⁰

- 국회에 계류중인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신보호법의 적용대상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를 포함하는 내용)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제시하라.
- 정부는 인신보호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당사자의 수용이 계속 필요하다는 수용기관의 의견 외에 제3의 독립된 기관의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고, 그 밖의 제도 개선 계획을 제시하라.

6. 형사보상제도

현재 구금에 대한 보상 및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2017년 형사보상금 신청건수는 7,347건에 지나지 않아⁵¹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 처리기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고 금액의 상한(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금액의 5배)⁵²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적절한 배상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정부는 매해 미결구금 된 사람 중 무죄재판을 받은 자(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수와 그 중 몇 퍼센트가 형사보상을 청구하고 있는지 통계자료를 제출하라.

⁵⁰ 인신보호법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 심포지엄 (2018. 6. 27. 개최 / 주최: 박주민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 자료집 참조

⁵¹ 검찰청 형사보상금 지급 현황 (나라지표)

⁵²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 정부는 형사보상제도의 실질화를 위하여 형사보상 결정 기한을 법령에 명시하고, 형사보상금액 책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의 계획이 있는지 설명하라.

7. 영창 등

영창 처분은 군 지휘관이 법관이 발부한 영창 없이 '행정 처분'으로 한 번에 최고 15일 까지 구금하는 자의적 구금이다.⁵³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고,⁵⁴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다만, 법안 통과는 불확실하고,⁵⁵ 더 나아가 국방부가 영창 폐지에 대한 대체별로 '군기 교육'을 도입하려 하고 있어 개악이 우려된다.⁵⁶ 이 제도는 관행을 볼 때,⁵⁷ 교육을 빙자 해 고강도 육체노동 및 단조로운 종교·정신교육을 강요하는 '고문'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 국가인권위원회도 우려를 표했다.⁵⁸ 군기교육의 자의적 결정과정을 볼 때, 이 역시 휴식권과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 끝으로 복무일수에서 군기교육

⁵³ <군인사법> 제57조 ② ... 2. 영창은 부대나 함정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제5조 ①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①도 동일하게 영창을 징계로 규정하고 있다.

⁵⁴ 국회의원 최재성(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징계입창 처분된 병은 2014년 14,151, 2015년 12,492, 2016년 10,778, 2017년 9,246, 2018년 8월까지 5,261명이었다.

⁵⁵ 2017년 9월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현재까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사위(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서는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국회뉴스ON, goo.gl/ySKacb). 한편, 국방부는 "2019~2023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에서 영창 폐지를 밝혔다.

⁵⁶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57조 제2항 5호. "군기교육이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복무 태도 교육 등의 교육 훈련을 시키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⁵⁷ (a) 2014년 집단구타로 사망한 윤일병 사건(BBC News, goo.gl/DjLTFN) 이후에도 육군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군기교육이 자행되고 있다. 2012년 이래 지휘관 임의로 '봉사대'를 운영하며 2016년 상반기 동안에만 143명의 군인을 토요일 오전에 소집하여 체력단련 등을 시킨 사건도 있었다. 이는 그나마 현행 규정(아래 e 참조)조차 위반한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6) "16진정047070"); (b) 공군도 마찬가지이다. 2015년 공군 훈련단에서는 예규를 어기며 각종 체력단련 7종을 30분 넘게 훈련병들에게 강요한 사건도 있었다(국가인권위원회(2016) "15진정0707500"); (c)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서울기동경찰교육센터의 '기울교육' 중 각종 체력단련, 매 걸음마다 고함 지르기, 일과시간 내 정좌자세 유지, 영하의 날씨에 속옷차림으로 찬 바람에 세워두기 등 각종 고문을 '인성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시행했다(경찰청 (2018.6.15). "경찰개혁위원회 공식 해단, 1년간의 활동 마무리"); (d) 현역에 부적합한 의학적 조건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복무 하더라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2014년 병무청의 국정감사 업무보고(2014.10.10.)에 따르면 강도 높은 체력훈련으로 유명한 '특전사'가 주관하는 정신교육이 공식화되었다; (e) <얼차려 규정> (육군규정 120), <군기교육> (해군 규정 2-1-6), <사랑의 별> (공군규정 2-24) 및 각 군 훈련단 예규 등. 단, 이들은 너무 세밀해서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기는 불가능해 자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⁵⁸ 국가인권위원회 (2018). "군 영창 폐지 관련 군인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기간을 제외해서 전역일을 늦추는 것도 이중처벌이다.⁵⁹

- 현행 군기교육 유관 규정과 시행현황을 모두 공개하라(각주 57의 (e) 포함).
-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상 '군기교육'에 대한 당국의 입장과 '군기교육'을 포함해 당국이 검토 중인 행정징계 벌목과 그 운영 방안을 있는 대로 모두 상술하라.

8. 국군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 舊 기무사⁶⁰)

안보사는 정보·수사기관의 직무를 넘어서 불법적 정치 관여, 세월호 유가족 사찰, 쿠데타 모의를 자행한 기무사의 규모를 줄이고, 일부 견제 장치를 설치해 이름만 바꿔 2018년 9월 탄생했다. 기무사는 군 시설 방문·면회객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열람하고, 전화를 감청하고, SNS도 감시했다. 심지어 故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장관간 전화를 도청했다.⁶¹ 집회 참가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분류해서 사찰했다.⁶² 결정적으로 이들은 2017년 3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등을 작성, 박근혜 대통령 탄핵 요구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폭도’로 규정하여⁶³ 계엄령을 선포해서 무장 병력으로 시민들을 진압하려는 군사 쿠데타를 계획했다.⁶⁴ 그렇지만 기무사 시절의 임무와 권한이 그대로 넘

⁵⁹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 ③ 현역병이 ...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 영창처분일수[는] ...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⁶⁰ 국군기무사령부

⁶¹ 동아일보, <http://bitly.kr/QglVg>

⁶² <보안업무규정> 제45조의 위임을 근거로 기무사(現안보사)와 국정원은 경찰이 가진 전산망 접속권을 받았다. 특히 기무사는 IP 1개만 받고도 이를 30개로 쪼개서 아무나 경찰 전산망을 열람했다. 또, 동 규정 제33조 제3항 6호에 따라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했다. 피해자 중에는 기자, 판검사 임용 예정자 등 군과 무관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군 병원 및 부대 면회객도 있었다. 기무사는 이들을 국가보안법 내사라는 명목으로 조회한 후 내사 종결 처리해서 사찰을 은폐했다(The Korea Times, goo.gl/LnA7sH; News1, goo.gl/MvFkQo; 연합뉴스, goo.gl/jVMq8n).

<보안업무규정> 제45조(권한의 위탁)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33조에 따른 신원조사와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에 대한 위탁은 군인·군무원,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와 그 밖에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로 한정한다.

제33조(신원조사) ③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⁶³ 집회 참가자 수는 최대 20만을 넘었으며(The Korea Herald, bitly.kr/WL4sx), 평화로운 시위를 기려 Friedrich-Ebert-Stiftung에서 17년 FES Human Rights Prize를 수여했다(bitly.kr/0INGJ).

⁶⁴ 참고로 기무사(現 안보사)는 계엄 담당 부서가 아니다. 단, 역사적으로 본다면 기무사는 계엄을 통한 쿠데타의 주범이었다. 보안사(기무사 전신)는 계엄령 남용 주범이고(한겨레 영문, goo.gl/i7BDSr; 한겨레, goo.gl/rAfw2), 세월호 유족 사찰(The Korea Times, goo.gl/grbNkY), 군사쿠데타 모의 등(AP News, goo.gl/NoeBjV)을 주도했다. 기무사는 계엄보다 덜 익숙한 위수령을 우선 선포, 보수당이 국회에서 위수령

어왔고, 언젠든 시민의 정부가 무너질 수 있다.⁶⁵

해제를 방해하고, 대통령 거부권으로 최대 2개월 계엄을 끌려 했다. 한편, 반대 시위를 대비해 주요 정치인과 인사를 사법처리하고 방통위를 통해 SNS를 폐쇄하려 했다(임태훈 (2018),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의 실체와 기무사 개혁 과제”, 긴급토론회 촛불 무력 진압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 그럼에도 60명의 요원을 동원해서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기무사 참모장 소강원 소장과 김병철 준장을(US DOS, 2018, “2018 Human Rights Report: Republic of Korea”),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피고의 방어권을 고려한다며 18년 12월 28일 보석을 허가한 상태다 (조선일보, <http://bitly.kr/ED0x7b>).

⁶⁵ 현행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은 과거 기무사 권능을 가져온 독소조항이 있다. 모두 폐지돼야 맞다.

|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독소조항 | 문제 |
|--------------------------------------------------------------------------------------------------------------------------------------------------------------------------------------------------------------------------------------------------------------------------------------------|--------------------------------------------------------------------------------------------------------------------------------------------------------------|
| 제4조(직무)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
| 1.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보안 업무 가.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나.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대상의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 다. 군 보안대책 및 군 관련 보안대책의 수립·개선 지원 라.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군무원, 시설, 문서 및 정보통신 등에 대한 보안 업무 | 이미 일선 부대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중복되나 이를 근거로 각급 보안부서가 담당하는 업무에 간섭, 일선 부대를 감시하는 근거 조항으로 악용 이를 통해 장병의 개인물품을 수색하는 등 초법적 행위를 자행함 |
| 3.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 업무 가. 국내외의 군사 및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 나. 대(對)국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정보: “대테러 및 대간첩” 다.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부장관의 조정·감독을 받는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정보 라. 군인 및 군무원,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부사관 임용예정자 및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임용예정자에 관한 불법·비리 정보 | “군 관련”이라는 용어를 근거로 <국가보안법>을 동원해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바 있음 나.목은 행위 주체가 불명확해 <대테러방지법> 악용 및 민간인 사찰 여지가 큼 다.목도 너무 광범위함. 라.목은 ‘동향관찰권’으로 과거 군인의 사생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 |
| 4. 「군사법원법」 제44조 제2호에 따른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 각종 기무사의 악행에 이용됨; 과거에도 실제 전문적 수사는 국정원, 경찰, 검찰이 담당했음 |
| 5.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원 업무 가. 정보작전 방호태세 및 정보전(情報戰) 지원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중 국방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지원 다. 방위사업청에 대한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업무 지원 라.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지원 | 지원업무’는 기무사가 정치에 간여한 근거가 된 조항 |
| 제6조(조직) ② 7. 국방보안연구소 | 제4조 제1항 1호와 동일함 |

<군사법원법>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수사한계) 2. 제43조 제2호에 규정된 사람: 「형법」 제2편 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와 「국가보안법」, 「군사기

- 안보사는 과거 악행을 방지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규제와 어떤 권력 감시 제도를 시민사회와 구축할 계획인지 제시하라.
- 기무사에 의한 군사 쿠데타 계획이 확인되었는데 재발방지 및 처벌을 위한 계획과 처벌 방안을 설명하라.

제10조

1. 인신구속자의 처우

「형집행법」 제108조 및 제109조 제2항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자는 최장 30일간 금지 징벌(독방 격리수용)을 받을 수 있으며 징벌 사유가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어 최장 45일간 격리될 수 있다. 이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제43조 제1항과 제44조가 금지하는 연속 15일 초과 독방 격리수용에 해당한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10개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5일 초과 금지 징벌을 받은 수용자의 수가 전체 금지 징벌자 대비 약 41%~60%에 이를 정도로 장기 징벌이 만연하다.

- 정부는 금지 징벌의 기간별 건수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라.
- 정부는 금지 징벌의 최장 기간을 15일 이하로 축소하도록 「형집행법」을 개정할 계획을 제시하라.

2. 외국인보호시설에서의 외국인 보호, 단속절차 및 강제퇴거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되는 외국인에게는 제한된 공간만이 주어진다. 또한 보호실 밖을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며, 엄격한 규율을 강요받고 있다.⁶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제도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것이고, 이들은 언제든지 보호되는 대신 출국을 선택 할 수 있으므로 보호시설에는 '구금'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된다)에 규정된 죄)

⁶⁶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소 등의 장소에 인치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보호'라 정의하고 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1항)

이는 자의적 구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⁶⁷ 또한 현행법에는 한국 국적이 없는 아동의 구금 및 구금의 상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⁶⁸ 부모가 강제되거 대상이 되는 경우 영유아도 부모와 함께 구금되는 관행이 존재한다.⁶⁹ 한편,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집중단속 과정에서 사전 고지나 건물주의 허락 없이 건물에 침입하여 미등록체류자를 체포하는 경우가 많으며, 체포 과정에서 미등록 체류 외국인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보호기간이 3개월이 넘는 경우, 3개월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사법부 등 독립된 주체에 의한 정기적 심사 및 구금 기간의 상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 정부는 전국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18세 미만 아동의 현황, 보호기간을 포함한 통계를 제시하라. 또한, 이주아동의 구금을 최후의 수단으로 하게 하고, 아동보호 등의 피치 못한 사유로 구금하게 될 때 아동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라.
-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보호'가 자의적 구금이 되지 않도록 구금의 개시, 계속, 상한에 있어 어떠한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제시하라.

제13조

1. 난민 제도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자에 대한 회부심사는 엄격한 기준 하에 운용되고 있어 2017년 기준 본 심사로의 회부율이 10%에 불과하며, 법무부에 의한 난민신청 1차 심사의 난민인정률은 지난 5년간 평균 0.66%에 불과하다. 난민신청 거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⁶⁷ 난민신청자의 경우, 체류기간 도과, 위명여권의 사용 등의 이유로 구금되어 외국인보호소 내에서 장기간 구금된 채로 난민절차를 진행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난민신청자가 4년 8개월간 구금된 사례도 있었다.

⁶⁸ 2017년, 이주아동의 보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동의 안전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금태섭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에 아직 계류중 이다.

⁶⁹ 실제로 지난 3년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만 67명의 아동이 구금된 바 있으며, 2016년에는 70명의 14세 이상 이주아동이 구금되었고,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225명의 18세 미만 아동이 전국 외국인 보호시설에 구금되었거나 구금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Korean Bar Association, 2015 Report on Survey of Immigration Detention Center, 2015)

청을 심의하는 난민위원회는 한 번의 회의에서 약 천 개의 사건을 심의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제기구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난민신청자는 의무적으로 HIV 검사결과가 포함된 신체검사서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하며, 법무부는 특정 국가 출신 난민신청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마약 검사를 위한 소변채취 및 범죄경력조회를 한 바 있다. 그리고 외국인보호소에 있는 난민신청자의 경우 강제송환금지 원칙으로 인해 퇴거명령 집행이 불가하므로 사안에 따라 구금이 아닌 대안적 방안이 필요하다.

-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회부심사기준을 공개하고, 지극히 낮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심사 회부율 및 난민인정률 문제를 개선할 계획을 밝혀라.
- 이의신청을 포함한 전 심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제거하고 정보접근성 및 전문성을 보강할 계획을 제시하라.
- 강제퇴거집행을 통해 출입국 행정구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난민신청자에 대해 구금 대안방안을 제시하라.

제14조

1. 사법농단

검찰이 2019년 3월 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전현직 판사 14명을 기소했다. 2017년 3월 판사 뒷조사와 법관 주최 학술행사 무마 외압 논란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된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당시 판사들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재판거래 수단으로 삼는 등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법농단'이 광범위하게 행해졌다는 의혹이 일정 정도 확인됐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앞장선 법원행정처 개혁도 미진하다. 위와 같이 단 14명의 기소 처분 외에는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하고, 훼손된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정부의 조치를 찾아보기 힘들다.⁷⁰

- 사법농단에 적극 가담한 법관들에 대한 처벌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⁷⁰ 2018년 11월 15일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이 한국정부에게 보낸 서한
<https://spcommreports.ohchr.org/TMResultsBase/DownloadPublicCommunicationFile?gId=24183>

- 사법농단 주범인 법원행정처 개혁 조치를 포함해 사법농단 사태 재발방지 대책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제15조

1. 보호감호제도

보호감호제도는 2005년 전면 폐지되었다. 하지만 보호감호제도 폐지 당시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보호감호 폐지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거나 당시 보호감호 집행 중인 수감자에 대해서는 그 폐지 적용의 예외를 두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른 폐지 적용의 예외가 합헌이라 결정했다. 2018년 1월 기준 피보호감호자 수는 총 84명으로, 피보호감호자들은 현재 일반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 한편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 수용된 보호감호자들은 2017년 가출소 기회 확대, 기간 단축 등을 촉구하며 집단 단식을 하기도 했다.

- 정부는 피보호감호자의 수, 가출소 또는 석방 계획 등 구체적인 개선 계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라.
- 보호감호제도 폐지 이후, 지속적으로 수감되어 있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구금 상황의 실태를 밝히고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제17조

1. 통신비밀보호법

'기지국 수사'⁷¹, '실시간 위치추적'⁷², '국가정보원의 패킷 감청을 포함한 폭넓은 감청의 허

⁷¹ 집회 참가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집회 장소 주변의 무선 기지국에서 신호가 잡히는 모든 휴대전화 내역을 제공받는 수사 방식

⁷² '실시간 위치추적'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통신서비스제공자가 대상자의 휴대전화나 인터넷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위치정보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하나로, 수사기관은 이를 제공받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수사상 필요한 경우'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 그 요건이 느슨하다. 2013년 파업 중이었던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은 노동자들과 그들의 자녀가 포함된 그 가족들 명의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아이디에 대하여 몇 달 간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하였다.

용' 등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이에 2014년 국가인권위⁷³는 정보인권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정을 권고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상기 사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⁷⁴을 내렸다. 2015년 자유권위원회도 기지국 수사의 집행 및 규제 불충분, 감청의 폭넓은 허용, 가입자 정보의 무영장 제공 등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⁷⁵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정부는 기지국 수사, 실시간 위치추적, 가입자 정보 무영장 제공, 폭넓은 감청의 허용 등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라.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⁷⁶는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는 식별번호로서 이를 통해 서로 다른 개인정보의 통합 및 추적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범죄에 악용되거나 개인에 대한 감시에 활용될 수 있다. 이에 1차 UPR(2008)⁷⁷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014)⁷⁸ 모두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공공서비스 제공' 혹은 '행정업무와 사법행정업무에 한정할 것'을 권고했다. 2014년 8월 7일부터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민간 영역에서도 주민번호가 수집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⁷⁹는 물론 이로 인한 인권침해⁸⁰도 줄

⁷³ 국가인권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자료제공 제도와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제도 개선권고, 2014.4.9.

⁷⁴ 헌법재판소, 2018.6.28 결정, 2012헌마538 기지국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요청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 2018.6.28 결정, 2012헌마191·550, 2014헌마357(병합),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 2018.8.30 결정, 2016헌마263 수사 기관의 권력남용을 견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 회선감청을 허용하는 것은 개인의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이다.

⁷⁵ CCPR/C/KOR/CO/4, para 42/43

⁷⁶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앞에 6자리는 생년월일을, 뒤의 7자리는 성별, 출생지, 해당지역 출생신고 순서, 오류검증번호로 이루어져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국민에게 출생시 부여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⁷⁷ A/HRC/8/40, para 64-13.

⁷⁸ 국가인권위원회,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권고, 2014.8.5.

⁷⁹ *S.Korea's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leads to increase in information leaks*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business/309086.html

⁸⁰ 헌법재판소는 2015.12.23, 2014헌마449 결정문에서 "주민등록번호 고유의 특징으로 인해 다양한 행정영역 뿐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그 활용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이나 오·남

어 들지 않았다. 오히려 본인확인기관⁸¹ 지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및 CI⁸²의 수집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임의번호'⁸³의 도입을 권고했으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 정부는 자유권위원회 및 국가인권위가 낸 권고의 적극적인 이행을 보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
- 정부는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번호체계'로 대체 할 방안을 제시하라.

3.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증인 정보보호 미흡

수사기관의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는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의해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피의자의 인격권 등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수사기관이 외국인 피의자의 국적, 실명을 공표하거나 잘못된 사실을 보도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피의사실 공표는 피의자 개인 뿐만 아니라 한국 내 해당 국적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형법」은 피의사실 공표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접수된 약 200건의 피의사실공표 관련 사건 중 기소된 건은 없었다.

- 피의자 정보 누설을 이유로 피의사실공표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업무상비밀 누설죄 등으로 고소, 고발이 제기된 경우 기소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라
- 수사기관의 부당한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피의자의 인격권 등 침해를 방지할 수

용으로 인해 언제든지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 이후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⁸¹ 「공직선거법」 82조의 6은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경우 실명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본인확인 기관'을 지정하고(제23조의3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특정 몇 개의 기업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등록번호가 특정 기업에 집중됨으로 인해, 본인확인기관(i-Pin)을 향한 해킹 공격이 발생하여(2015.2.28~3.2) 75만건의 아이핀 부정발급이 이뤄졌다. (http://www.koreatimes.co.kr/www/nation/2018/07/113_174690.html)

⁸² CI는 Connecting Information의 약자로 본인확인기관에서 개인에게 부여하는 88 byte로 구성된 개인 식별번호를 의미한다.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개인별로 고유한 식별번호를 가지게 되고, 이는 '온라인 주민등록번호'의 역할을 한다.

⁸³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체계와는 달리 '나이, 출신지역, 성별'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무작위 난수로 된 번호체계를 의미한다.

있는 구체적인 계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라.

4.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증인 정보보호 미흡

2018년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5년간 보복범죄가 2,020건에 달해 매년 평균 400건에 이른다.⁸⁴ 수사기관, 공공기관에 공익제보를 한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명예훼손, 협박 등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인적 사항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채 가해자에게 제공되는 경우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⁸⁵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등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제도 공백의 개선, 국가기관의 피해자 보호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 범죄신고자, 피해자, 증인에 대한 보복범죄가 연간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복범죄 및 인적 사항을 알아내 괴롭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은 무엇인가
- 수사기관, 공공기관에 공익제보를 한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생기고 신변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5.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현행 「전기통신사업법」⁸⁶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는 부모나 청소년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스마트폰 감시법은 청소년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부모의 교육권도 침해한다. 또한 차단수단으로 설치되는 스마트폰 관리 어플리케이션은 유해 매체물 차단 외에 스마트폰 사용내역 모니터링, 대화 내용 모니터링, 위치추적 등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안에

⁸⁴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48270>

⁸⁵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0987>

⁸⁶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①「전파법」에 따라 할당 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의 제공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약해 청소년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 정부는 청소년의 사생활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의 폐지 계획을 제출하라.

6. 가입자 정보 제공

정보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자정보(성명,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및 해지일)를 수집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은 정보수사기관이 그 필요성을 판단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가입자의 정보가 제공되는 과정에 사법 통제는 전무하고 정보주체에게도 통지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수많은 정보들이 결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수집의 키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정보수사기관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핵심 개인정보라 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정부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정보수집, 분류, 보관, 활용체계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해외보다 훨씬 큰 기본권 침해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통신자료제공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한국적 특성을 고려하면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방식을 개선해야 하고, 그 첫 출발점은 정보주체의 관리통제권 강화인데 현재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7. 통신사실확인자료보관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 2항에 따라 모든 가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유선전화사업자는 6개월, 이동통신사업자는 12개월, 인터넷사업자는 3개월 동안 각각 보관해야 한다. 제도 도입 때부터 장기간 보관에 따른 사생활침해 논란이 있었고, 해외와 비교해도 데이터보관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국회의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제도를 규율하는 것도 문제이다.

- 정부는 사생활침해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 침해 정도가 심각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무보관제도를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밝히고, 있다면 그 이행 방안을 제시

하라.

8. HIV/AIDS와 프라이버시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는 의료 관계자가 HIV 감염인의 의료 정보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있지만⁸⁷ 여전히 HIV 감염인의 의료 정보는 의료 현장 혹은 구금 시설에서 자주 누설된다. 또한 한국은 동법 제19조⁸⁸에 의거하여 바이러스 미검출인 감염인도 “전파매개”를 이유로 처벌을 하고 있다.

- 의료 현장 및 구금 시설 내에서 HIV 감염인이 의료 정보의 누설 피해를 입은 통계를 제공하라.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에 근거한 수사, 기소 및 처벌 통계를 제공하라..

제18조

1.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의 2018년 6월 28일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를 법률로서 규정해야 한다. 정부는 2018년 12월 28일 대체복무제안을 발표하고 2월 7일까지 입법에 관한 의견을 취합했다.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육군 복무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현역 군인의 병역거부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을 4월중으로 입법 발의할 예정이고, 국회에서 다른 법안들과 함께 논의가 될 것이다.

- 정부는 현역 군인보다 현저하게 긴 기간으로 대체복무를 시행해야만 하는 합리

⁸⁷ 제7조(비밀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2. 감염인의 진단·검안·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사람
3.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사람

⁸⁸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라.

- 정부는 현역 군인과 예비군의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계획하고 있는지 제시하라.

제19조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발족 후 방송과 인터넷 부문에서 내용심의를 담당해온 행정기관⁸⁹으로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근거로 통신심의를 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의 통신심의는 심의 기준이 매우 광범위⁹⁰하고, 불법 여부가 위원회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에 대한 비판적인 정보도 삭제 대상이 되는 등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⁹¹ 심의위원은 정부와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다.

⁸⁹ 정부는 해당 기관이 민간기구라고 보고하였으나, 한국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 기관이 행정기관이라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려왔다.

⁹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2장 심의기준에 의하면 국제평화질서(제5조), 헌정질서위반(제6조), 범죄 기타 법령 위반(제7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제8조) 등 구체적인 기준 없이 광범위하게 심의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다.

⁹¹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트위터 계정 '2MB18nomA(<http://twitter.com/2MB18nomA>)에 대한 국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였고(2011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홈페이지가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며 '이용 해지'(사실상의 폐쇄)를 명령했다(2011년). 또한 주요 언론사의 왜곡된 보도에 항의하기 위해 해당 언론사 광고지면 불매운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2차 보이콧이라는 이유로 대량 삭제했다(2009). 영국인 기자 마틴 윌리엄스(Martyn Williams)가 운영하는 북한 ICT 홈페이지(<https://www.northkoreatech.org>)를 국가정보원의 신고에 따라 북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의 불법사이트라며 접속 차단했으나, 법원에 의해 이 결정은 번복되었다(2016년). 최근에는 불법 동영상 및 불법 촬영물의 근절을 이유로 SNI(Server Name Indication)차단방식을 도입하여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는, 사실상의 사후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2017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백서'에서 볼 수 있듯이, 연간 15만~20만건에 이르는 인터넷 콘텐츠를 심의하고, 그 중 94~95%에 대하여 삭제·이용해지·접속차단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불법정보뿐만 아니라,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에 따른 '유해' 정보도 심의 대상이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연 평균 15만건의 인터넷 사이트, 게시물을 삭제, 차단하고 있다.⁹²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⁹³의 지적과 같이, 방심위에 의한 통신심의는 사실상 사후검열제도로써 기능하고 있다. 이에 2010년 국가인권위⁹⁴와 유엔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보고서⁹⁵ 및 2차 UPR은 방심위의 기능을 독립적인 위원회로 이전할 것과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권고⁹⁶ 한 바 있다.

- 정부는 국가인권위와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이 낸 권고의 적극적인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행정심의의 중단과 정치적·상업적 및 기타 부당한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기구에게 그 기능을 이양할 계획을 제시하라.
-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로 축소하거나 심의 위원의 정치적 구성 방식을 변경할 계획을 제시하라.

2. 망중립성

정부는 2014.11. 5. 개정 상호접속고시(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로 도입된 발신자 종량제 원칙을 2016.1.1부터 시행하여, 망사업자들 사이의 접속에 있어서 순발신자망이 순

〈표3-2-1〉 심의 현황

(단위 : 건, %)

| 구분 | 심의 | 시정요구 | | | | | 청소년유해매체물 | | 해당없음 | 각하등 |
|-------|------------------|------------------|-----------------|-------------------|-----------------|-------------------|--------------|-------------|----------------|--------------|
| | | 삭제 | 이용해지 | 접속차단 | 기타* | 소계 | 결정 | 결정취소 | | |
| 2014년 | 140,421 (100) | 24,581 (17.5) | 10,031 (7.1) | 97,095 (69.1) | 1,177 (0.8%) | 132,884 (94.6) | 274 (0.2) | 14 (0.0) | 7,96 (5.1) | 153 (0.1) |
| 2015년 | 158,073 (100) | 27,650 (17.5) | 9,821 (6.2) | 111,008 (70.2) | 272 (0.2%) | 148,751 (94.1) | 145 (0.1) | 3 (0.0) | 8,825 (5.6) | 349 (0.2) |
| 2016년 | 211,187 (100) | 35,709 (16.9) | 8,422 (4.0) | 157,451 (74.6) | 209 (0.1%) | 201,791 (95.6) | 143 (0.1) | 5 (0.0) | 8,771 (4.2) | 477 (0.2) |
| 합계 | 509,681 | 87,940 | 28,274 | 365,554 | 1,658 | 483,426 | 562 | 22 | 24,692 | 979 |

※ 기타 :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⁹² Korea Internet Transparency Report 2018 http://transparency.kr/wp-content/uploads/2018/08/2018-KTIR_eng.pdf

⁹³ A/HRC/17/27/Add.2, para 93.

⁹⁴ 국가인권위원회, 정보통신심의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2010.10.18.

⁹⁵ A/HRC/17/27/Add.2

⁹⁶ A/HRC/22/10, para 124.50/51/52.

수신자망에게 누적통행량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도록 강제하였다. 이 고시는 망사업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고자 하는 정보의 제공자들을 유지하지 않을 동기를 강화하여 망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을 저하시켜 자신의 인터넷접속서비스 고객인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더 높은 인터넷 접속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세계 유일하게 인터넷 접속료가 떨어지지 않는 기현상을 계속 보이면서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접속료는 \$9.22/Mbps로 미국과 유럽의 각각 4.3배, 7.2배 정도에 일본의 \$2, 싱가포르의 \$1.39에 비해 최고수준이다(Telegeogrphay 2018). 나아가 망사업자가 자신의 망을 지나는 정보 패킷에 대하여 망중립성을 위반하는 발신자종량제 원칙을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은 힘없는 개인이 막강한 정부나 기업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주장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이며 자신이 올린 정보에 여러 사람이 접근했다고 해서 정보의 전달료를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인터넷의 기본구성원리인 망중립성 원리는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보장해왔기 때문에 인권의 일부분으로 여겨져 왔다.

- 정부는 망중립성을 훼손할 동기를 지속적으로 부여하는 2016년 시행 발신자 종량제 상호접속기준을 폐지할 의사가 있는가?

3. 학교 안 표현의 자유 탄압

2016년 실시한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1%가 학교 교칙에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조항이 있다고 응답하였다⁹⁷. 실제로 2018년에 학교 내 성폭력 고발운동(‘스쿨미투’)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대자보를 게시하자, 학교 직원들이 대자보를 일방적으로 철거하거나 게시할 때 학교장의 승인을 요구하는 등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일이 있었다⁹⁸. 한동대, 숭실대, 장신대 등의 종교 재단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페미니즘, 성소수자 관련된 강연이나 행사를 불허하거나, 성소수자 지지 표현을 한 학생을 징계하는 등으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⁹⁹.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1.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취소할 것을 권고하였으

⁹⁷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6. 12.

⁹⁸ 잇따르는 ‘스쿨미투’... 이제는 ‘미투 폭로 대자보’ 부착금지?, 아시아경제, 2018. 12. 12.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21209002202855>)

⁹⁹ 숭실대, ‘성소수자’ 문구 이유로 현수막 설치불허, MBC뉴스, 2019. 3. 6.

(http://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193131_24698.html),

‘무지개사건 징계는 무효’ 장신대 학생들 소송, 한겨레, 2018. 12. 4.

(<http://www.hani.co.kr/arti/PRINT/872971.html>)

나¹⁰⁰ 권고에 강제력이 없어 대학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정부는 중고등학교 안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라
- 정부는 종교 관련 대학에서의 소수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와 차별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라

4.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

자유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제4차 정기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통해, 국가보안법 제7조의 폐지를 요구한바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 해 남북 정상간의 공동선언들이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고 평가하였다. 국가의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의미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 뿐만 아니라 법 자체가 존립할 근거가 사라졌다. 정부는 국가보안법 7조 폐지에 대한 연간 입법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동 조항 폐지를 위한 의견 청취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구속, 기소 사례는 최근까지 발견되고 있다.

- 국가보안법 7조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공하라.
- 국가보안법 7조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국민에 대한 사면복권 및 국가보안법 7조로 재판 중인 모든 국민에 대한 공소 취소에 대한 입장을 제공하라.

5. 형법상의 명예훼손/모욕

현행법¹⁰¹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

하나님의 대학'에 성소수자는 없는가, 뉴스앤조이, 2018. 1. 11.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5297>)

¹⁰⁰ 한동대·송실대, 건학 이념은 강요·제재로 이를 수 없어, 2019. 1. 8.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1970>)

¹⁰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 있으며 모욕죄도 형사처벌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하였는데, 상해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상당히 높게 설정되었다.

- 정부는 UN인권위원회와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비범죄화 계획을 제시하라.
- 법원은 UN의 권고와 달리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엄정 처벌을 도모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한 이유를 밝혀라.

6. 임시조치

현행법¹⁰²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만 하면 정보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법에 따라 연간 약 45만건의 게시글이 삭제되고 있으며¹⁰³, 대부분이 소비자 불만글이나 연예인, 종교지도자 등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글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게시글이 삭제되어도 삭제된 자에게 이의제기권을 규정하지 않아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 정부는 임시조치 제도를 폐지하거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다 보장하는 방향의 제도개선 계획을 제시하라.
- 정부는 임시조치 제도가 기업이나 공인에 대한 비판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남용

¹⁰²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¹⁰³ <https://opennet.or.kr/nomoreblocking>

되고 있지 않은지를 감시하기 위해 임시조치 현황과 통계를 관리하고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밝혀라.

7.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2016년 11월,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인들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 범죄를 폭로하며 약 5개월 동안 광화문 광장을 점거하고 예술행동을 실천했다. 이 과정에서 문화예술인들은 박근혜, 김기춘, 조윤선 등 주요 정부 인사들을 특검에 고발했다. 정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활동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공표했다. 수사권이 없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밝혀낸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 범죄는 "단체 342개, 문화예술인 8,931명"에 이른다. 또한 위원회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 범죄가 당시 청와대, 국가정보원, 경찰,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대다수의 정부 문화예술 기관을 통해 일상적으로 자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규명'(책임자 처벌 관련 수사 및 징계 의뢰 131명), '제도개선 및 후속조치'(법제도 및 기관 개혁 관련 9개 권고안)을 권고하였다.

- 정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 범죄의 온전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가칭)<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수사권과 조사권이 보장된) 진상규명 위원회 활동 계획을 제시하라.
- 정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의 권고를 책임 있게 이행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제시하라.

제20조

1. 이주민, 난민, 성소수자 혐오 발언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혐오와 혐오선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가짜 뉴스를 만들고 전파하며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이 존재한다.¹⁰⁴ 혐오세력은 조직화 세력화 되고 있다. 일부 정

¹⁰⁴ 2018. 9. 13. CNN "In South Korea, opposition to Yemeni refugees is a cry for help"
<https://edition.cnn.com/2018/09/13/opinions/south-korea-jeju-yemenis-intl/index.html>

치인들도 발언을 통해 혐오를 확산시키고 있다. 온라인에서 이주민과 난민 관련한 각종 뉴스에 부정적인 다수의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아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킨다.¹⁰⁵ 포털사이트에 정기적으로 웹툰을 제작 게시하여 선동행위를 한다. 또한 집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¹⁰⁶ 일반 대중을 상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전략적인 혐오 및 혐오선동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혐오표현을 규제하거나 처벌할 법적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인종차별금지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의 94%가 온라인상에서 혐오표현 피해를 경험했다. 선거철이 되면 국회의원, 시장, 교육감 후보자들의 성소수자 차별선동 및 혐오발언이 반복되고 있다. 김문수 전 서울시장 후보는 “동성애는 담배 피우는 것보다 훨씬 유해하다. 한번 맛들이면 끊을 수 없다”는 등 심각한 수준의 성소수자 차별선동 및 혐오발언을 하였다¹⁰⁷.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에 대한 비방금지나 허위사실 공표금지 등의 규정은 두고 있으나 후보자들의 혐오발언, 소수자 차별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거나 위반시 제재하는 규정이 없다.

- 정부는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혐오, 혐오선동 활동 또는 혐오선동세력을 제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정책이나 법제도 개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선거 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포함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금지하는 방안을 제공하라

제21조

1. 집시법 개정

제4차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자유권위원회는 집회에 대한 실질적 허가제 운영, 과도한 무력 및 차벽 사용, 자정 이후 시위 제한, 집회 참여자에 대한 형법 적용 등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집회 자유의 권리에 대한 제약이 규약 제21조에 엄격하게 일치하도록 해야

¹⁰⁵ 2018. 10. 17. New York Times “South Korea Denies Refugee Status to Hundreds of Fleeing Yemenis” <https://www.nytimes.com/2018/10/17/world/asia/south-korea-yemeni-refugees.html>

¹⁰⁶ 2018. 9. 17. Hangyoreh “Pro-refugee and anti-refugee demonstrators engage in verbal clash on Seoul city center”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international/862438.html

¹⁰⁷ “동성애가 흡연보다 유해” 김문수 발언 인권위 진정돼, 한겨레, 2018. 6. 2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9694.html)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출범한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과 대부분 겹친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행계획을 제시하는 등 권고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했으나 아직까지 어느 하나도 구체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작년 5월 헌법재판소가 국회 앞 100m 집회금지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올해 말까지 집시법 개정도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 자유권위원회 및 경찰개혁위원회가 낸 권고의 적극적인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
- 집회금지 장소를 명시하는 집시법 11조 폐지를 포함하여 자유권위원회,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그리고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집시법 개정안을 제시하라.

2. 학생의 표현 및 결사의 자유

다수의 초·중·고등학교가 학생의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학칙을 두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83.1%의 중·고등학교의 학칙에 존재한다. 예를 들면, 교외 집회 참여를 이유로 한 학생 징계 규정, 학생들의 자발적 모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 집단행동(쟁의행위)을 금지하는 규정, 교내 집회를 학교장 허가사항으로 두고 있는 규정 등이다. 집회 참여를 이유로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학교에 의해 집회 참여를 제지 당한 사례가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기도 했다. 현재 학생들의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는 전무하다. 심지어 지난 정부는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하는 학생의 집회의 자유에 관한 조항이 “교사의 교육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청구하기까지 했다.

- 초·중·고등학교 내 학생의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칙을 폐지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가?

3. 성소수자 집회권리 침해

지난 2018년 인천 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인천시 동구청에 장소 사용을 요청하였다가 규정에 있지 않은 주차장 확보 등의 무리한 요구를 이행하지 못해 불허를 당했다. 이러한 일은 2017년 제주퀴어문화축제 신청때에도 비슷하게 불허가를 하여 법정 공방을 통해 축제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퀴어문화축제 개최 자체에 난색을 표

하며 규정에 관계없이 행사를 거절하거나 거절할 명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성소수자들의 집회 권리 침해일 뿐 아니라, 성소수자 및 성소수자 행사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하기도 한다.

- 정부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장소 사용 규정을 완화하고 실질적 신고제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
- 정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경찰청에 성소수자 행사의 평화적인 진행을 위한 인권교육 및 대 사회 캠페인 계획을 제시하라.

제22조

1.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4차 심의 최종견해에서 제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고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과 해고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유보를 철회하기 위한 계획을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와 직결된 ILO 협약 87호 및 98호 비준에 대해서도 사용자 단체의 반대를 구실로 2019년 4월 5일 현재까지 사실상 비준을 위한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헌법 33조에 의해 보장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크게 제약하고 있는 하위법령 역시 존치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제2조에서 '노동자'와 '사용자'를 협소하게 정의하여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결사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설립신고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허용되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되고 이를 넘으면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가압류가 뒤따른다.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는 공무원과 교사는 노조가입 및 활동범위가 크게 제한된다.

- 제22조 유보 철회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밝히고, 이를 해결하여 유보를 철회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기를 포함한 계획을 제시하십시오
-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 특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에서 배제된 해고자, 실업자, 구직자, 그리고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제시하십시오.
- 결사의 자유 행사를 이유로 민형사상 제재를 가하는 관행을 중단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제시하시오.

제23조

1. 보육사업지원확대

한국의 0~5세 아동이 이용하는 4,184개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은 13%에 불과하고 이중 51%도 개인에게 위탁되고 있다. 정부의 보육정책 방향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보다 비용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어린이집의 설립자들은 원장의 인건비 이외에 채무 상환이나 비용 보전을 위한 이윤을 추구하게 되었다. 불법을 예방하기 위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주기적으로 회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 공시되고 있으나 총괄적인 자료만 있고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없다. 이런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현재 보육료가 학부모에게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어 회계 감독이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

- 대통령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을 40%와 사회서비스의 공적 공급 확대를 위한 사회서비스원(공단) 설립을 공약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근거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해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보육, 노인요양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공적 공급을 어떻게 확대할 계획인지 답변하라.

2. 귀환 결혼이주여성과 재외 다문화가족 자녀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별거 후, 혼자 또는 자녀를 동반하고 본국으로 귀환한 여성은 혼인 해소가 되지 않은 채로 귀환하거나 일방적으로 이혼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녀 양육권 등의 권리도 확실히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일부 국가는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판결문 등의 서류가 있어야 현지 법에 따라 이혼이 가능한데, 이 경우 현재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서류를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위임을 하여도 한국국적이 없으면 한국인 배우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 서류를 발급받기 어렵다.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법은 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는 한국국적자이나 미성년자이며 보호자인 어머니가 한국인 아버지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자녀들은 해외에서 체류, 교육, 의료 등의 문제를 겪게 된다. 또한 대한민국

여권이 만료되어도 연장할 방법이 없어 한국영사관의 도움을 받기 힘들다.

- 귀환 결혼이주여성의 출신 국가에 있는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한국인 배우자의 주소지 확인, 혼인 상태 확인, 이혼서류 발급 및 송달 등 민원업무 촉탁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주시시오
- 귀환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이 여권 만료 후에도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하고 한국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나 조치를 정비할 방안을 밝혀주시시오

제24조

1. 출생등록

한국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신고가 있을 때에만 출생등록이 가능하다.¹⁰⁸ 부모가 출생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며¹⁰⁹,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 그 결과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채 발견되는 아동이 매년 약 200여명에 이르며,¹¹⁰ 허위 출생신고 사례도 발생한다. 또한 현행 제도는 한국 국적자의 출생등록만 허용한다. 이주아동은 부모의 출신국 재외공관을 통한 출생등록만 할 수 있어, 박해의 주체인 출신국 공관에 접근이 어려운 난민, 인도적 체류자격 아동, 한국에 미등록 체류 중인 부모의 자녀 등은 출생등록이 불가하다.¹¹¹

- 정부는 현재 출생등록이 되지 못한 아동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정부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등과 무관하게 출생과 동시에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을 제시하시오.

¹⁰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¹⁰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¹¹⁰ ① E-나라지표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② 2017년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아동유기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책임연구원: 현소혜), 2017

¹¹¹ The Korea Herald, Feb 10, 2019. <[Multicultural Korea] Undocumented children in South Korea deprived of basic rights> (source: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90208000401>)

2. 아동의 국적

한국에서 출생한 아동은 부 또는 모가 한국인이거나, 부모 모두를 알 수 없거나 부모가 모두 무국적인 경우에만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며,¹¹² 그 외의 경우에는 아동에게 한국 국적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의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동은 아버지가 인지 신고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 취득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아버지의 협조가 없으면 출생등록과 한국 국적 취득이 불가하다. 무국적 판정절차도 부재하여, 무국적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 정부는 한국에서 출생한 무국적 아동의 수와 발생 사유에 대한 현황 자료를 제시하시오.
- 정부는 무국적 판정절차를 도입할 계획과, 무국적자로 판정된 아동에게 어떠한 권리를 보장할 것인지 그 계획을 제시하시오.

3. 학교 내 체벌과 비교육적 징벌

현재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지만,¹¹³ 약 5%의 초등학생과 약 15%의 고등학생은 여전히 신체적 체벌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체벌금지를 명시하지만,¹¹⁴ 2011년 교육부는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구타하는 형태의 '직접 체벌'만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관련 종사자에게 적극적으로 체벌금지를 알리고 교육하지 않는다. 중고등학교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학생은 4명 중 1명 빈도로 나타났으며,¹¹⁵ 참여자의 28.2%는 구타 형태의 체벌을, 35.8%는 고통스러운 자세나 동작을 강요하는 형태의 체벌을 당하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도 있다.¹¹⁶ 그러나 체벌을 한 가해자 교사의 행위는 아동학대 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등 적절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모든 형태의 학교 내 체벌을 금지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¹¹² 국적법 제2조

¹¹³ 아동복지법 제5조 제2항

¹¹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¹¹⁵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총괄보고서

¹¹⁶ 국가인권위원회(2016),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보장 실태조사

- 체벌 금지를 알리고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기 위한 홍보 계획을 제시하시오.
-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통계 현황을 제시하시오.

4.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아동보호

2018. 4. 시작된 스쿨미투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나, 피해학생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중·고교 성희롱·성폭력 피해사례 33건 중 교원 중징계는 1건(직권면직)밖에 없었다.¹¹⁷ 친구와 선후배에 의한 폭력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초등학생이 모욕적인 말(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한 경험은 중고등학생보다 그 빈도가 높다.¹¹⁸ 그러나 학교 내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형식적인 제도운영에 치중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학폭위 처분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건수는 2013년 764건에서 2017년 1868건으로 2배 넘게 증가하였다.¹¹⁹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학생 4,500명 중 24.8%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채팅·메신저를 통한 사이버폭력 비율은 가해 50.3%, 피해 45.6%로 가장 높았다.¹²⁰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해맑음센터는 전국에 1개밖에 없는 등 정부의 대책은 미약하다.

- 학교폭력 대상별, 유형별 통계현황을 제시하시오.
- 괴롭힘(bullying), 사이버폭력, 교사에 의한 성학대 등이 증가하는 현실에 대처하고, 학생 신고자 보호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5. 아동양육비 확보

정부가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서울에 1개소만 설립되어 전국적으로 기능하기 한계

¹¹⁷ 국민일보, 2019. 2. 18. <스쿨미투 1년... 학교는 변하지 않았다> (source: <http://bitly.kr/YEILH>)

¹¹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총괄보고서

¹¹⁹ 중앙일보, 2019. 1. 21.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 두고 고심 깊은 교육부, 왜?> (source: <https://news.joins.com/article/23306542>)

¹²⁰ 방송통신위원회(2017), 2017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가 있다. 2018년 9월 기준 양육비 이행율은 31.9%였는데,¹²¹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감치 결정 등으로 미약하다.¹²² 양육비가 3회 이상 이행되고 있는 건수도 전체 대비 46.9%에 그쳤으며, 한시적 양육비 지급율은 신청대비 36.6% 였다.¹²³ 이는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아동의 권리를 제한한다.

- 양육비 이행을 확보를 위한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조치는 무엇인가?
- 정보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운영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고, 추후 개선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6. 수용자 자녀의 면접교섭권

수용자 자녀는 연간 54,000여명(19세 미만 인구의 약 0.5%)으로 추산되며, 매년 27,500명의 수용자 자녀들이 누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여성만 출산한 자녀를 생후 18개월까지 양육할 권리를 인정하며, 그 허가도 소장의 재량사항이다.¹²⁴ 또한 수용자 자녀는 부모의 처우 등급에 따라 면회횟수나 방법이 제한된다.¹²⁵ 부모의 수용등급이 개방처우급이 아닌 경우, 창살 등 차단시설 없는 곳에서 접견할 수 없다. 중경비처우급으로 분류된 경우, 가족만남의 날도 적용되지 않는다.¹²⁶ 한편, 법정공휴일 면회가 불가능한 점, 대부분 원거리에 있는 수용시설까지 이동해야 하는 비용부담,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 종사자나 위탁부모의 부정적인 인식은 아동의 부모 면접권을 어렵게 한다.¹²⁷

- 수감된 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의 수 및 감옥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아동 현황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시오.

¹²¹ 여성가족부 정책보고에 따르면, 채권 확보 등으로 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된 건수 대비 실제 이행 건수는 2015년 21.2%, 2016년 29.6%, 2017년 32.0% 였다.

(source: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sn=705999)

¹²²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¹²³ 국회입법조사처(2018), 양육비 이행 관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여성가족부 제출자료(2018.10.31.)

¹²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80조

¹²⁵ 형이 확정된 수용자는 “경비처우급”에 따라 수용시설과 계호의 정도, 작업기준 등 처우수준이 달라진다. 경비처우급이 높아질수록 제한사항이 많으며, 그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개방처우급, (2) 완화경비처우급, (3) 일반경비처우급, (4) 중경비처우급. 처우등급은 형벌의 종류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해지며, 생활점수나 작업 성적 등 소득점수에 따라 달라진다.

¹²⁶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2조 - 제90조

¹²⁷ 국가인권위원회(2017),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 수용자와 그 자녀의 연간 면회횟수, 면회 시간, 접견방법, 접견 장소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수용자 처우등급에 따라 제시하시오.
- 수용자 자녀의 면접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현황을 제시하시오.

7. 성착취 피해아동의 보호

한국은 모든 성매매 피해아동을 보호하지 않는다.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로 분류된 '대상아동·청소년'은¹²⁸ 국가의 성폭력 지원체계를 이용할 수 없고,¹²⁹ 소년법상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¹³⁰ 피해자가 아닌 결과 가해자에 대한 배상명령도 불가하다.¹³¹ 사실상 피해아동이 성매수범죄의 공범으로 인식되는 실태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이 성매매에 처음 유입된 경로는 '스마트폰 채팅 앱(59.2%)', '인터넷 카페, 채팅(27.2%)'이 차례로 높았다.¹³²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착취 범죄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어플리케이션 운영자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을 삭제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시오.
- 성인과 구별되는 아동 성매수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현황을 제시하시오. (현행법상 피해아동·청소년 및 대상아동·청소년 모두의 통계자료 포함)
- 온라인 성착취 및 그루밍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제25조

1. 공직선거법개정

현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국은 OECD국가 중 유일하게 만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이를 만 18세 또는 그 이하로 낮추라는 청소년 및 시민들의 요구가 있지만 반영되고 있지 않다. 피선거권은 만

¹²⁸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7호, 제13조 제2항

¹²⁹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의2 제1호 나목

¹³⁰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¹³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호

¹³² 국가인권위원회(2016),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

24세 이상에게만 주어져(대통령은 40세 이상), 청년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중 국민이 할 수 없는 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정당 및 후보를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후보자 이름이 명기된 사진과 문서를 배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선거시기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비판을 막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성인의 경우 온라인상의 선거운동은 허용되었지만, 선거법에 따라 원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청소년은 온라인상으로도 선거시기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해 추천 및 비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치러지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의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다수의 표를 '사표'로 만드는 결과를 양산하고 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수가 지역구 의석수 대비 47:253 정도로 매우 적으며 결선투표도 치르지 않는다. 현행 선거제는 소수정당과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반복해서 도출하고 있다.

- 선거연령 및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가?
- 청소년과 유권자의 선거시기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가?
-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제 투표결과와 의석수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가?

2. 수형자의 선거권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즉 실형 1년 이상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와 가석방자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이에 수형자들이 2016년 7월 헌법재판소에 위 법률조항의 위헌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선거권의 박탈은 범죄에 대한 응보적 기능을 갖는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했다.¹³³ 위 법률조항에 따라 복역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과실범 등이 구체적인 범죄의 내용에 대한 고려 없이 실형 1년 이상을 선고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¹³³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292등 결정

- 정부는 선거권을 박탈당한 실형 1년 이상을 선고 받은 수형자의 수, 범죄종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형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계획 등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

3. 피치료감호자의 선거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호는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위 법률조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기 위해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피치료감호자는 예외 없이 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 정부는 선거권을 박탈당한 피치료감호자의 수, 치료감호의 사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치료감호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

제26조

1. 성소수자 증오범죄

지난 몇년동안 대학 내 성소수자 동아리들은 신입생 환영 현수막을 걸 때마다 현수막이 뜯겨지고 찢겨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성소수자를 향한 증오범죄는 온라인과 기물 훼손을 넘어 실제 사람들에 대한 폭력으로도 이어진다. 지난 2018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반 성소수자 집단은 축제의 개최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을 둘러싸고, 모욕적인 발언과, 물리적인 폭력, 성추행 등을 저질렀다.

- 정부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과 증오범죄에 의한 피해를 조사, 연구하고, 법적 대응, 제도 마련 등 혐오표현과 증오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시행 계획을 밝혀라

NGO 보고서 작성단체

(사)아동복지실천회세움, 공권력감시대응팀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을만드는법),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군인권센터,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좋은기업센터, 환경운동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문화연대, 민주

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알권리보장지원 노스웨스트 호,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땃똥,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십대여성인권센터, 오픈넷,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전쟁없는 세상, 정치개혁공동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진실과 정의 네트워크 (4·9통일평화재단,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제주다크투어, (재)진실의 힘,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한국난민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사단법인 두루,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예코팜므, 재단법인 동천,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한부모연합 **(총 97개 단체)**